

「공정거래분쟁조정법」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도입 17년 만에 일원화된 법률 마련 -
- 현행 분쟁조정제도 전반을 일괄 정비하여 중소기업·소상공인 피해구제 강화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「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(약어: ‘공정거래분쟁조정법’) 제정안(총 6장 44개 조문)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< 추진 배경 및 경과 >

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**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**(이하 ‘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’)는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**대체적 분쟁해결수단**의 하나로,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**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**이다.

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'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에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*되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 **영세사업자의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****하여 왔다.

* 현재 총 6개 공정위 소관 법률(도입년도)에 규율되어 있음: 공정거래법('07년), 가맹사업법('08년), 하도급법('11년), 대규모유통업법('12년), 약관법('12년), 대리점법('16년)

** 2007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이래 약 3만여 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하여, 매년 수백억 원 상당의 경제적 성과(조정성립금액+절감된 소송비용) 달성 ('23년 기준 접수건수 3,481건, 경제적 성과 1,308억 원)

그러나,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래로 **17년이 지난 지금껏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운영되어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제도 전반의 체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.**

이에,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에 제정 법률안을 마련('23.9월)한 후 입법예고('23.12월~'24.1월), 공청회('24.1.12.), 법제처 심사('24.3월~8월)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,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.

< 제정안 주요 내용 >

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**첫째**, 분쟁조정 관련 절차·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하고, **둘째**, 간이조정절차, 감정·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**제도적 장치**를 신설·보강하며, **셋째**, **한국공정거래조정원**(이하 ‘조정원’)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**능동적 역할**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.

첫째, 공정거래법 등 **6개 법률**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**하나의 법률에 통합** 규정하고,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던 조정위원회(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정기구) 구성,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,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**통일적으로 규정**하였다.

구체적으로, ‘**하도급거래분쟁**’ 및 ‘**약관분쟁**’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‘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’를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공정위가 **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** 하였다.

또한,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‘**약관분쟁**’도 다른 분야와 같이 **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** 공정위가 **시정조치나 시정권고**를 하지 **않도록** 규정했다.

아울러, 분쟁 심의의 공정성·독립성 강화를 위해 **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, 해임·해촉·연임 규정** 등을 신설·정비하였다.

둘째, 보다 **신속·효율적인 분쟁조정**을 위해 **분쟁조정 관련 제도를 신설·보강**하였다.

먼저, ‘**간이조정절차**’를 도입하여, 당사자간에 분쟁 사실·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**신속히 조정*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또한, ‘**감정·자문제도**’를 도입하여,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·기관으로부터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**조정 성립 가능성**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.

아울러, 종전에 일부 분야에만 운용되었던 ‘소회의(3인 위원으로 구성)’ 및 ‘집단분쟁조정 절차’를 6개 전 분야로 확대하였다.

<주요 신설·보강 제도>

- ▲ (간이조정절차 신설) 쟁점이 적은 사건은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 결정하여 신속 처리
- ▲ (감정·자문제도 도입)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·자문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
- ▲ (소회의 확대) 경미한 사건은 조정위원 3인 회의로 조정(5개 분야→소분야(공정거래 분야 추가 도입))
- ▲ (집단조정 확대) 공통 쟁점 사건을 일괄 처리하는 절차(집단조정) 적용 범위 확대(약관→소분야)

셋째,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던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하고,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·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하였다.

<향후일정 및 기대효과>

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「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.

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붙임: 「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전문

담당 부서	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홍형주 (044-200-4300)
		담당자	서기관	이원섭 (044-200-4303)

<참고>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주요내용

구분	주요내용	
현행 분쟁조정제도 일괄 정비	법 조문 이관	○ 분쟁조정 관련 규정 일체 이관(6개법률→제정법)
	통일	○ 조정 절차 각하·종료 사유 통일 ○ 약관 분야 분쟁조정 관련 누락 사항 보완 - 분쟁당사자의 합의사항 이행 및 이행결과 보고 의무, 합의사항 이행 시 공정위의 시정조치 면제 등을 약관 분야에도 적용 ○ 비밀엄수의무 위반시 범정형 통일
	보완	○ 신의성실의무, 조정위원 신분 보장 등 명시 ○ 분쟁조정협의회를 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○ 조정위원 제척사유 추가 ○ 보궐 조정위원 임기 조정 ○ 사실관계 조사 근거 규정 보완
분쟁조정 제도적 장치 보강	신설	○ 간이조정절차 신설 ○ 감정·자문 제도 신설
	확대	○ 소위원회 확대(5개 분야→6개 분야 전체) ○ 집단분쟁조정 제도 확대(약관 분야→6개 분야 전체)
조정원 역할 개편	법 조문 이관	○ 조정원 설립 관련 규정 일체 이관(공정거래법→제정법)
	역할 강화	○ 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·홍보 및 지원 등을 조정원 업무로 규정 ○ 규제 영향분석, 국제협력 등 조정원이 수행하여 온 기존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
	운영 규정 등 정비	○ 조정원 내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○ 임원의 임기, 조정원 운영·감독 관련 규정 등 정비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

